

20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령

эм북 보건/의료

공부혁명!
mbook.kr

- ★ 스마트폰 수험총서
- ★ 법/영/규칙/별표 종합, 고득점 가능
- ★ 최근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2시간 45분 완성, 암기코드 제공

도서명 : 국민건강보험법령

ISBN : 979-11-7393-031-7

발간일 : 2025-06-04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0,000원



국민건강보험법령

[목차]

제1권 국민건강보험법(p4)

제1장 총칙(p6)

제2장 가입자(p18)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p39)

제4장 보험급여(p61)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p108)

제6장 보험료(p117)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p168)

제8장 보칙(p172)

제9장 벌칙(p216)

제2권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p223)

제1절 총칙(p224)

제2절 적용기준 등(p232)

제3절 의뢰 등(p249)

제4절 요양급여대상(p259)

제5절 요양급여 결정신청(p273)

제6절 요양급여의 결정(p285)

제7절 조정 등(p302)

제8절 보칙(p319~325)

제1권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

[약어]

보건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

심의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평가원은 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심사평가원 원장

센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재산점수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분납은 분할납부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남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용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건강증진에 대해
- 보험급여를 실시해
-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2. 관장

- 건강보험사업은 장관이 주관

3. 정의

가. 근로자

-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 대가로 보수 받아 생활

- 법인 이사, 임원 포함
- 공무원, 교직원 제외

나. 사용자

1) 근로자 소속 사업장 사업주

2) 공무원 소속 기관 장

a) 입법부

- 국회의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b) 행정부

-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

방통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 중앙행정기관 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 대학교, 대학, 전문대학의 장

- 교육감, 교육장

c) 사법부

-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법원 지원 장

d)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e)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 선관위 사무처장

3) 교직원 소속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다. 사업장

- 사업소나 사무소

라. 공무원

- 국가등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

마. 교직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경영기관 근무

교원/직원

바. 기타

1) 징수위탁근거법

-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2) 징수위탁보험료등

-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분담금 등

4. 장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 거쳐 5년마다 수립

- 수립된 계획 변경시도 같다

나) 종합계획 내용

- 보험정책 기본목표, 추진방향

- 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방법

- 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운영

- 보험료 부과체계

- 요양급여비용

- 건강증진 사업

- 취약계층 지원

- 보험 통계, 정보 관리

- 보험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

국제협력, 장관 인정 사항

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심의 거쳐 수립/시행

라)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마) 다음 경우 보고서 작성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종합계획 수립/변경
-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바) 필요시 관계 기관 장에 자료 요구

-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함

5. 심의위

가. 설치

- 다음 심의를 위해 장관 소속으로 둠

1) 종합계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점수당 금액

6)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사항(의결은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 소득 파악
실태 조사, 연구
- 가입자 소득 파악,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방안
- 심의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건강보험 주요 사항

- **요양급여 각 항목 상대가치점수**
- **약제,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 상한**
- **부가급여 등 심의위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구성

1)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5명

- 위원장은 보건부차관

2) 위원은 다음 중 장관이 임명/위촉

a)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 추천 각 2명

b) 시민(비영리민간), 소비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단체 추천 각 1명

c) 의료계, 약업계 대표 단체 추천 8명

d) 다음 8명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명

· 기재부, 보건부 3급 또는 고공단 일반직 중 소속 기관 장이 1명씩 지명

- 이사장/원장 추천 각 1명
- 건강보험 학식/경험 풍부한 4명
- 상기 위원 중 위원장이 부위원장 지명

e) 위원(단, 공무원 제외) 임기

- 3년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시 된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다. 기타

- 장관은 국회에 심의위가 보험료 부과 제도 개선 심의한 사항 보고 요

제2장 가입자

5~12조

1. 적용 대상 등

가. 국내 거주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됨

나. 다음은 제외

-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 2) **유공자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이하 **유공대상자**)

- 단, 다음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됨

a) 유공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

b) 건강보험 적용받던 자가 유공대상자로
되었으나 보험자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안함

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의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형제/자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 모두 충족

가. 부양요건

1) 배우자: 동거 불문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a) 부모(부나 모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동거시: 인정

- 비동거시